

수원지방법원 2020. 5. 19 선고 2019나70667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5. 19 선고 2019나70667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9. 6. 13 선고 2018가단52316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

담당변호사 김경인, 손성락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복

변론 종결2020. 4. 7.

판결 선고2020. 5. 19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가단523163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0,2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3. 6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강태훈

판사안희경

판사김봉남